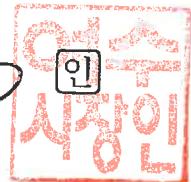


제23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0 월 31 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조례 제1982호

붙임 여수시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982호

여수시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교통사고” 를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사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투광기 설치 등) ① (생 략)</p> <p>②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p>	<p>제6조(투광기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사고 -----.</p>